

4. 住宅建設工事監理費支給基準中 改正基準

建設交通部告示 第1995-90號 1995. 3. 18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감리대가등) ①감리자의 감리업무에 대한 감리비용(이하 “감리대가”라 한다)은 총공사비(주택단지내에 건설하는 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다음표에서 정하는 해당 인·월수에 기준금액과 승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총공사비(원)	20억이하	30억	50억	100억	200억
감리인·월	10.03	14.50	23.73	46.21	89.59
총공사비(원)	20억이하	30억	50억	100억	200억
총공사비(원)	300억	500억	1,000억	2,000억	3,000억이상
감리인·월	133.32	217.76	428.43	844.44	1,247.24

* 주)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선보간으로 한다.

※감리대가 산출방법

감리대가 = 총공사비에 따른 공사감리인·월수 × 기준금액 × 승수 (1.0548 × 2.63)

- 기준금액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중급감리원 1인 직접인건비(63,339원) × 25일

- 승수(1.0548) : 중급감리원의 직접인건비 기준에 따른 환산비 평균치(2.63) : 직접인건비에 대한 1.1배의 간접비와 직접인건비 및 간접비의 0.25배의 보상비를 적용한 수치

②감리자는 감리원별 현장 상주기간에 별표의 감리원등급별 환산비를 곱하여 산출한 인·월수의 합계를 제1항의 총공사비에 의한 감리인·월수 이상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감리원별 현장상주기간은 당해 공종의 공사기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별표] 감리원등급별환산비

등	급	환 산 비
특	급 감 리 원	1.699
고	급 감 리 원	1.238
중	급 감 리 원	1
초	급 감 리 원	0.692
보	조 감 리 원	0.645

- ①이 감리비 지급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착공신고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잘 지은 건물하나 평생동안 나의 명함